

제 292 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6.3.20.)

조례 · 일반의안 검토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전 병 준]

목 차

1	거창군 입영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의원발의)	안 전 총 괄 과	1
2	거창군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원발의)	환 경 과	8
3	거창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원발의)	농 업 축 산 과	17
4	거창군 서덕들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원발의)	농 업 소 득 과	26
5	거창군 산림자원 소득증대 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 림 과	33
6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산 림 과	39
7	거창군 거창창포원 지방정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환 경 과	42
8	거창군 별바람언덕 운영 및 관리 조례안	행 복 농 촌 과	46
9	거창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기본계획(안)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	행 복 농 촌 과	52
10	거창군 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	도 시 건 축 과	55
11	거창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	도 시 건 축 과	60
12	거창군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	도 시 건 축 과	63

거창군 입영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가. 발의일자: 2026. 3. 6.

나. 발 의 자: 표주숙 의원 대표발의(11명)

(표주숙, 이재운, 신중양, 신미정, 김향란, 최준규, 김홍섭,
이흥희, 신재화, 박수자, 김혜숙)

다. 회부일자: 2026. 3. 6.

2. 제안이유

-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거창군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군민의 자부심을 고취하고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며,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및 제2조)

나. 입영지원금 지급 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다. 지급 방법 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라. 신청 및 지급 절차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병역법」 제2조 및 제5조

나. 예산조치: 필요시

다. 합 의: 안전총괄과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6. 2. 24. ~ 3. 4.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붙임참조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5. 검토의견

조례 제정의 필요성 : 필요

-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예우와 격려

상위법규 및 다른 법률과의 저촉여부 : 해당없음

-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 「병역법」 제2조 및 제5조

재정부담 여부(예산조치사항) : 필요시

- 조례안 제3조에 따라 필요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음.

입법 운영상 예상 문제점 : 해당없음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거창군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하여 격려코자 하는 목적으로써 지급대상과 지급방법, 신청 및 지급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조 항	주요 내용	세 부 내 용
제1조	목적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거창군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하여 예우와 격려를 규정
제2조	정의	입영, 현역, 사회복무요원 등의 용어를 「병역법」에 따라 정의
제3조	지급 대상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현역 및 사회복무요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
제4조	지급 방법 등	① 입영지원금은 1회만 지급 ② 거창사랑상품권 으로 지급 가능 ③ 금액·서식·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함
제5조	신청 및 지급 절차	① 입영 전 읍·면장에게 신청(입영통지서 첨부), 복무 중에도 신청 가능 ② 읍·면장은 대상 여부 확인 후 군수에게 명단 송부 ③ 군수는 지급 여부 결정 후 신청인에게 통보 ④ 접수일부터 30일 이내 지급 노력
부칙 제1조	시행일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부칙 제2조	적용례	시행일 이후 입영하는 병역의무자부터 적용

○ 안 제2조 정의에서 「병역법」의 용어를 그대로 인용함으로써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고 법적 일관성을 확보하였음.

○ 안 제3조에서 지급 대상을 거창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자로 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이 실 거주자에게 합리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였음.

○ 다만, 대상 범위를 현역·사회복무요원에게만 지급하도록 제한하고 있어 보충역·상근예비역 등과의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음.

- 안 제4조에서 지급 방법을 1회 지급 원칙으로 하여 중복 지원을 방지하였으며,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부칙 제2조에서는 시행일 이후 입영자부터 적용하도록 하여 소급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였음.
- 다만, 지급에 관한 규정만 있고, 환수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부정수급에 따른 대처를 위해서는 환수조치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검토됨.
- 본 조례안은 「병역법」을 근거로 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병역의무 이행자를 지원하는 내용으로써 지방자치단체는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 권한을 가지며, 입영지원금은 병역의무 이행을 직접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 병역법상 의무 이행자에 대한 지원이므로 상위법과 충돌하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마련한 보완적 제도라고 할 수 있음.
- 참고로, 경남도내에서 이와 같이 입영지원금 지급하는 곳은 합천군과 거제시가 있으며, 사천시는 2026.2.26. 조례를 제정하고 2027.1.1.부터 시행 예정임.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951호, 2024. 1. 9., 타법개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병역법」

제2조(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징집”이란 국가가 병역의무자에게 현역(現役)에 복무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2. “소집”이란 국가가 병역의무자 또는 지원에 의한 병역복무자(제3조제1항 후단에 따라 지원에 의하여 현역에 복무한 여성을 말한다) 중 예비역(豫備役), 보충역(補充役), 전시근로역 또는 대체역에 대하여 현역 복무 외의 군복무(軍服務)의무 또는 공익 분야에서의 복무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3. “입영”이란 병역의무자가 징집(徵集)·소집(召集) 또는 지원(志願)에 의하여 군부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4. “군간부후보생”이란 장교·준사관·부사관의 병적 편입을 위하여 군사교육기관 또는 수련기관 등에서 교육이나 수련 등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고용주”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기업체나 공·사 단체의 장으로서 병역의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6. “병역판정검사전문 의사”란 의사 또는 치과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채용되어 신체검사업무 등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전환복무”란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의무경찰대원 또는 의무소방원의 임무에 복무하도록 군인으로서의 신분을 다른 신분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8. “상근예비역”이란 징집에 의하여 현역병으로 입영(入營)한 사람이 일정기간을 현역병으로 복무하고 예비역에 편입된 후 지역방위(地域防衛)와 이와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집되어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9. “승선근무예비역”이란 「선박직원법」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항해사 또는 기관사로서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또는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와 군수물자를 수송하기 위한 업무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승선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10. “사회복무요원”(社會服務要員)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 등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의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공익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단체(公共團體)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이하 “사회복지시설”이라 한다)

제5조(병역의 종류) ① 병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현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징집이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兵)

나. 이 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라 현역으로 임용 또는 선발된 장교(將校)·준사관(準士官)·부사관(副士官) 및 군간부후보생

2. **예비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현역을 마친 사람

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

3. **보충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병역판정검사 결과 현역 복무를 할 수 있다고 판정된 사람 중에서 병력수급(兵力需給) 사정에 의하여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복무하고 있거나 그 복무를 마친 사람

1) 사회복무요원

2) 삭제

3) 예술·체육요원

4) 공중보건 의사

5) 병역판정검사전담 의사

6) 삭제

7) 공익법무관

8) 공중방역수 의사

9) 전문연구요원

10) 산업기능요원

다.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4. 병역준비역: 병역의무자로서 현역, 예비역, 보충역, 전시근로역 및 대체역이 아닌 사람

5. 전시근로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 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는 할 수 없으나 전시근로소집에 의한 군사지원업무는 감당할 수 있다고 결정된 사람

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사람

6. 대체역: 병역의무자 중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보충역 또는 예비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

②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은 예비역의 장교·준사관·부사관 또는 병으로,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은 보충역의 장교·준사관·부사관 또는 병으로,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사람은 전시근로역의 부사관 또는 병으로 구분한다.

③ 병역의무자는 각각 그 병역의 병적에 편입되며, 병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거창군 자원순환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가. 발의일자: 2026. 3. 6.

나. 발 의 자: 김향란 의원 대표발의(11명)

(김향란, 이재운, 신중양, 신미정, 최준규, 김홍섭, 표주숙,
이흥희, 신재화, 박수자, 김혜숙)

다. 회부일자: 2026. 3. 6.

2. 제안이유

- 본 조례안은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 개정·시행(2024.1.1.)됨에 따라, 자원의 생산·소비·유통 등 전 과정에서 효율적인 이용과 폐기물 발생 억제, 순환이용 등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거창군 자원순환 기본 조례’를 ‘거창군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로 변경

나.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기본원칙을 규정함(안 제1조~안 제3조)

다.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수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안 제5조)

라. 순환경제사회의 발전을 위한 문화 조성에 관한사항을 규정(안 제6조)

- 마. 순환경제집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순환경제 통계조사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안 제8조)
- 바. 품질인증 순환자원 우선구매, 재정적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안 제10조)
- 사. 집행계획등의 심의자문,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안 제12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지방재정법」 제17조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조, 제3조, 제5조, 제9조, 11조, 26조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3조1항
- 나. 예산조치: 필요시
- 다. 합 의: 환경과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6. 2. 25. ~ 3. 5.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붙임참조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5. 검토의견

- 조례 개정의 필요성 : 필요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필수
- 상위법규 및 다른 법률과의 저촉여부 : 해당없음

-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지방재정법」 제17조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조, 제3조, 제5조, 제9조, 제11조, 제26조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3조1항

□ 재정부담 여부(예산조치사항) : 필요시

- 조례안 제10조 따라 필요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음.

□ 입법 운영상 예상 문제점 : 해당없음

□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 개정·시행(2024.1.1.)됨에 따라, 자원의 생산·소비·유통 등 전 과정에서 효율적인 이용과 폐기물 발생 억제, 순환이용 등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조 항	주요 내용	세부 사항
제명	변경	'거창군 자원순환 기본 조례' ⇒ '거창군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제1조	목적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에서 자원 효율적 이용, 폐기물 억제, 순환이용 촉진으로 지속가능한 사회 구축
제2조	정의	용어 정의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조에 따름
제3조	기본원칙	자원 효율적 이용, 제품 수명 연장, 폐기물 순환 이용 단계(재사용→재생→에너지회수→적정처분)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관련 조례 제·개정 시 본 조례 목적과 방향에 부합해야 함
제5조	군수 등의 책무	군수: 종합적 시책 수립·시행 / 사업자: 친환경 포장재, 일회용품 억제 / 군민: 재사용·재활용 생활화

제6조	문화조성	군수는 주민 이해 증진, 문화 확산 노력 / 필요시 기관·단체에 사업 위탁 및 예산 지원 가능
제7조	집행계획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연차별 집행계획 수립·시행
제8조	통계조사	집행계획·목표 설정을 위한 순환경제 통계조사 및 자료 요청 가능
제9조	우선구매	군수는 순환자원 사용제품을 우선 구매 노력, 공공·민간에 구매 장려
제10조	재정적 지원	재활용 촉진, 일회용품 억제, 군민 실천사업, 민·관 협력, 산업 육성 등 지원 가능
제11조	심의·자문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집행계획, 문화 조성, 교육·홍보 등 심의·자문
제12조	교육·홍보	군수는 교육·홍보 실시, 관련 기관·단체에 예산 지원 가능
부칙 제1조	시행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
부칙 제2조	경과조치	종전 규정에 따른 행위는 본 조례에 따른 행위로 간주

○ 안 제1조에서 단순히 폐기물 관리가 아니라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에서 자원 효율성을 높여 지속가능한 사회를 지향하는 것으로 목적을 확대함.

○ 안 제3조에서는 재사용 → 재생이용 → 에너지 회수 → 최종처분의 단계적 원칙을 명문화함으로써 기본원칙을 구체화함.

○ 안 제5조에서 군수는 국가 시책과 연계한 종합계획 수립·시행을 의무화하고, 사업자는 친환경 포장재, 과대포장 억제, 일회용품 최소화 등 실질적 노력 요구, 군민은 생활 속 재사용·재활용 실천 강조함으로써 주체별 책무를 강화함.

- 안 제6조에서 순환경제에 대한 주민 이해 증진, 교육·홍보, 위탁사업 가능성까지 규정하여 순환경제 문화 조성을 유도함.
-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연차별 집행계획 수립과 통계조사 권한 부여로 정책 근거 강화함.
- 안 제11조에서는 「거창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른 ‘거창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심의·자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새로운 위원회를 만들지 않고 기존 위원회가 기능을 수행하도록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임.
- 조례의 구조는 목적 → 정의 → 원칙 → 책무 → 실행체계 → 지원 → 심의 → 교육 → 부칙 순으로 행정조례의 전형적 구조라고 볼 수 있으며,
- 상위법인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의 목적·정의·기본 원칙과 일치하며, 법령 위임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구체화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어긋남은 없음.
- 이 조례는 단순한 폐기물 관리 차원을 넘어, 지역 차원의 순환경제 생태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의도가 강하며, 특히 군민·사업자·행정이 함께 책임을 나누고, 문화·교육·재정 지원까지 포괄하는 점에서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 모델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951호, 2024. 1. 9., 타법개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지방재정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91호, 2023. 8. 8., 타법개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10. 1.>

1. “순환경제”란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버려지는 자원의 순환망을 구축하여 투입되는 자원과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친환경 경제 체계를 말한다.
2. “순환경제사회”란 모든 사회의 구성원이 함께 노력하여 순환경제를 달성함으로써 환경 보전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구현하는 사회를 말한다.
3. “순환이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 가.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서 사용된 물질 또는 물건을 다시 자원으로 재사용 및 재생이용하는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련의 활동
 - 나.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4. “순환원료”란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서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수거된 물질 또는 물건의 전부·일부를 원형 그대로 또는 가공을 거쳐 순환이용할 수 있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순환자원”이란 제21조 또는 제23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거나 지정·고시한 물질 또는 물건을 말한다.
6. “자원순환”이란 환경정책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순환이용하는 등 자원의 순환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이용·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7. “자원순환산업”이란 폐기물을 최대한 순환이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과 제도를 연구·개발하는 산업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종(業種)의 산업을 말한다.
8. “자원순환시설”이란 생산공정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거나 폐기물을 순환이용하는 데 사용되는 시설·장비·설비 등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 국민 등 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1.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 자원의 낭비를 최대한 억제할 것
2. 내구성(耐久性)이 우수한 제품의 생산 및 제품의 수리 등을 통하여 제품의 수명을 연장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할 것
3. 폐기물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순환이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4. 발생한 폐기물은 기술적·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다음 각 목의 원칙에 따라 최대한 순환이용할 것

- 가.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사용할 것
- 나. 재사용이 곤란한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생이용할 것
- 다. 폐기물을 재생이용할 경우 순환경제를 달성하는 데 효율적인 수단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것
- 라. 재사용·재생이용이 곤란한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에너지회수를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에너지회수를 할 것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순환이용이 불가능한 것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하게 처분할 것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국가의 시책에 따라 국가와의 적절한 역할 분담 및 관할구역의 경제적·자연적·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순환경제사회의 발전을 위한 문화 조성) ① 정부는 순환경제사회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사회 전반에 순환경제 문화가 널리 보급·정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순환경제 문화의 조성 및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에 관련 사업을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 10. 1.>

제11조(시행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시행)

③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26조(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 ①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원료로 사용한 제품(이하 “순환자원사용제품”이라 한다)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포장 및 용기 등에 순환자원사용제품임을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26. 10. 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순환자원사용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으며, 민간단체나 기업에 우선

구매를 권유할 수 있다. <개정 2026. 10. 1.>

- ③ 순환자원사용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그 포장 및 용기 등에 제1항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약칭: 순환경제사회법 시행령)

[시행 2026. 10. 1.] [대통령령 제35804호, 2026. 10. 1., 타법개정]

제3조(순환경제 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한 사업의 위탁 수행) ①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민법」 제32조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3.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

거창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가. 발의일자: 2026. 3. 6.

나. 발 의 자: 김향란 의원 대표발의(11명)

(김향란, 이재운, 신중양, 신미정, 최준규, 김홍섭, 표주숙,
이흥희, 신재화, 박수자, 김혜숙)

다. 회부일자: 2026. 3. 6.

2. 제안이유

○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양봉 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안 제3조)

나.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다. 사업 지원 및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안 제6조)

라.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지방재정법」 제17조

2)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5조,
제12조, 제13조

3)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4) 「축산법」 제3조

나. 예산조치: 필요시

다. 합 의: 농업축산과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6. 2. 25. ~ 3. 5.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붙임참조

4)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5. 검토의견

조례 제정의 필요성 : 필요

-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 도모

상위법규 및 다른 법률과의 저촉여부 : 해당없음

-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지방재정법」 제17조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5조, 제12조, 제13조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 「축산법」 제3조

재정부담 여부 : 필요시

- 조례안 제5조 따른 재정 부담 발생

입법 운영상 예상 문제점 : 해당없음

□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거창군 내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써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에 대한 군수의 책무, 사업지원 및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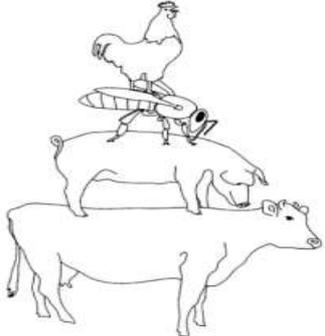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구 분	주요 내용	세부 사항
제1조 (목적)	조례 제정 목적	양봉산업 안정적·지속적 성장, 농가 소득 증대, 지역경제 발전
제2조(정의)	용어 정의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름
제3조 (군수의 책무)	군수의 역할	- 경쟁력 확보 시책 발굴·추진 - 밀원식물 보호·육성·보급 - 기후변화 영향 파악 및 대책 마련
제4조 (지원계획 수립)	지원계획 수립 의무	- 지원·육성 방안 - 밀원식물 조성·관리 및 서식환경 보호 - 기술교육·전문인력 양성 - 실태조사 - 경영안정 지원 - 질병 방역 - 기타 필요 사항
제5조 (양봉산업 지원)	지원사업 범위	- 시설·기자재 설치 - 신제품 육성·보급 - 경영안정 사업 - 토종별 산업 육성 - 유통·판매 지원 - 병충해 방제 - 축제·문화행사 지원 - 기타 필요 사업
제6조 (양봉농가 등 지원)	지원대상	- 등록된 양봉농가 - 법 제17조에 따른 단체
제7조(홍보)	홍보 활동	다양한 매체 활용, 판매 증진 및 소비 촉진
부칙	시행 시점	공포한 날부터 시행

- 안 제2조에서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정의를 두고 있어 상위법과의 정합성이 확보됨.
- 안 제3조에서는 단순한 지원 의무를 넘어 밀원식물 확대, 기후변화 대응까지 포함해 지속가능성을 강조하였음.
- 안 제4조에서는 교육, 실태조사, 질병 방역, 경영안정 등 산업 전반을 포괄하는 계획 항목을 명시하여 지원계획의 체계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음.
- 안 제5조에서는 시설·기자재, 신제품, 토종별, 유통·판매, 축제·문화행사까지 포함해 산업적·문화적 가치 모두 고려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명시하고 있음.
- 안 제7조에서는 단순 생산 지원을 넘어 소비 촉진까지 연결,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홍보 조항을 포함함.
-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기본적으로 정합성이 있으며,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은 발견되지 않음.
- 안 제5조 양봉산업 지원에 관한 사항은 「양봉산업법」 제 12조와 중복되는 부분도 있기는 하나,
- 이 조례는 양봉산업을 지역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농가 소득·지역경제·환경 보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됨.

○ 다만, 안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 시 농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과 「경상남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도지사가 5년마다 수립하는 ‘양봉산업 육성 기본계획’과 연계하여야 할 것이며, 꿀벌의 공익적 기능과 가치를 높이고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이 수립되어야 할것임.

- 참고적으로, 꿀벌은 양봉산물 뿐만 아니라 화분매개를 통해 농작물 생산 기여, 자연생태계 유지 등 경제적, 공익적 그리고 환경·생태 보전적 가치를 지님.

<p>* 유럽에서 꿀벌은 가축중 경제적 지위 3위 (Jürgen Tautz, 독일 생물학자, 꿀벌 연구로 유명한 과학자)</p>	
<p>* 16개 주요 작물(과수 7, 채소 9) 생산액 12.4조원 중 화분매개로 인한 생산성향상 등 가치는 50% 수준인 5.9조원 : '14년,안동대 (국가별 꿀벌의 경제적 가치 : 미국 23조원, 유럽 8조원, 호주 2조원)</p> <p>* 헌화식물 중 약 70~80%의 수분 활동을 매개함으로써, 생물 다양성 보전과 생태계의 유전자원의 유지에 기여(FAO)</p> <p>[미국: 꿀벌의 꽃가루받이 등 공익적 가치는 꿀벌 산물의 143배에 이르고(USDA, '83), 주요 작물의 생산에 꿀벌의 기여도는 총 145억\$(Cornell大, '00)]</p>	

●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951호, 2024. 1. 9., 타법개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

가. 못·늪지·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지원

다. 농업자재의 관리

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바. 농가 부업의 장려

사. 공유림 관리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자. 가축전염병 예방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타. 중소기업의 육성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하. 우수지역특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지방재정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91호, 2023. 8. 8., 타법개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

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
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5. 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 ③ 삭제 <2013. 7. 16.>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양봉산업법)

[시행 2026. 1. 23.] [법률 제21001호, 2025. 7. 22.,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봉산업”이란 꿀벌을 사육하여 판매하거나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양봉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가공·유통·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꿀벌을 사육·관리하여 얻어지는 벌꿀
나. 꿀벌로부터 얻어지는 로열젤리·화분·봉독·프로폴리스·밀랍 및 수벌의
번데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봉의 부산물
2. “양봉농가”란 꿀벌을 사육하여 꿀벌 또는 양봉의 산물·부산물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농가를 말한다.
3. “밀원식물”이란 꿀벌이 꽃꿀, 꽃가루와 수액의 수집을 위하여 찾아가는 식물
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봉산업의 경쟁
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
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밀원식물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밀원식물을 보호
하고 육성·보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양봉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3. 9. 14.>

제5조(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꿀벌의 공익적 기능과 가치를 높이고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등을 위하여 5년마다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2조(양봉농가와 양봉산업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양봉 관련 시설·기자재 및 양봉 산물·부산물 가공시설의 설치
2. 꿀벌 신제품 육성·보급 사업
3.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
4. 전통산업의 맥을 이어가는 토종벌산업 육성
5. 꿀벌 및 양봉 산물·부산물의 유통·판매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양봉농가의 등록의무) ① 양봉농가는 해당 시장[특별자치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이하 “행정시장”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14.>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9. 14.>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의 기준과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양봉산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6. 1. 23.]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52호, 2026. 1. 23., 일부개정]

제5조(양봉농가의 등록 기준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양봉농가의 등록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6. 1. 23.>

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양봉농가는 꿀벌을 사육하기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양봉농가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 1. 23.>

■ 축산법

[시행 2026. 1. 23.] [법률 제20998호, 2025. 7. 22., 타법개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개량·증식, 토종 가축의 보존·육성, 축산환경 개선,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유통개선·이용촉진, 사료의 안정적 수급, 축산 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 위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2. 2. 22., 2013. 3. 23., 2018. 12. 31.>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거창군 서덕들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가. 발의일자: 2026. 3. 6.

나. 발 의 자: 신미정 의원 대표발의(11명)

(신미정, 이재운, 신중양, 김향란, 최준규, 김홍섭, 표주숙,
이흥희, 신재화, 박수자, 김혜숙)

다. 회부일자: 2026. 3. 6.

2. 제안이유

- 서덕들은 우수한 경관과 생태적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경관농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경관 관리의 지속성과 농가 참여 확대에 한계가 있으므로 농업·경관·관광을 연계해 지속가능한 경관농업 추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기본이념, 용어 정의, 군수의 책무(안 제1조~제4조)
- 나. 보전 및 활성화 사업(안 제5조)
- 다. 주민지원사업(안 제6조)
- 라. 위원회 설치 등(안 제7조~제12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필요시

다. 합 의 : 농업소득과 【조례 제정 타당성 여부 : 부(장기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 해당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6. 2. 19 ~ 2026. 2. 26.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 붙임참조

4)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5. 검토의견

조례 제정의 필요성 : 필요

- 농업·경관·관광을 연계해 지속 가능한 경관 농업 추진과 관광 상품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상위법규 및 다른 법률과의 저촉여부 : 해당없음

-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재정부담 여부 : 필요시

- 안 제5조, 제6조에 따라 재정 부담 발생

입법 운영상 예상 문제점 : 해당없음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거창군 위천면 서덕들의 경관을 보존하여 관광 활성화와 주민 소득을 증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조 항	주 요 내 용
제1조(목적)	서덕들의 원형적 농업 경관과 청정 논 생태계를 보호·관리·활성화하여 농업 보존과 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
제2조(기본이념)	① 주민 자발적 실천 기반 경관관리 문화 계승 ② 벼농사 중심 전통 농업 지속 ③ 자연환경 훼손 방지 및 구조물 난립 억제 ④ 주민 의견 반영 및 주도성 보장 ⑤ 참여 농가에 정당한 보상·지원
제3조(정의)	① 농업경관: 농업활동 공간의 경관·문화·생태적 가치 ② 서덕들: 군수가 지정·고시한 위천면 상천리 일원 구역
제4조(군수의 책무)	농업경관 보전·활성화 시책 수립·시행 및 재원 확보 노력
제5조(보전 및 활성화 사업)	환경·자원 조사, 종합계획 수립, 경관·전략 작물 재배 지원, 보상금·인센티브, 민간협업체 운영, 주민 참여 프로그램, 관광 콘텐츠·시설 설치, 성과평가·모니터링 등
제6조(주민 지원사업)	① 주민 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 가능 ② 사업 추진 시 서덕들 주변 마을 주민 우선 참여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서덕들농업경관보전위원회 설치 가능. 구역 지정, 작물 선정, 지원 대상·금액 심의, 관광 콘텐츠·시설, 분쟁 조정, 주민 의견 수렴, 성과평가 반영 등 자문
제8조(위원회 구성)	위원장(부군수) 포함 11명 이내. 당연직(주관부서장, 위천면장) + 위촉직(군의원, 전문가, 주민·농가 대표). 간사 1명(운영 담당 팀장)
제9조(위원회 회의)	위원장이 소집, 부득이 시 부위원장 대행. 과반 출석·찬성으로 의결. 필요 시 전문가·관계인 참석 및 자료 요청 가능
제10조(위원 임기)	임기 2년, 연임 가능. 당연직은 재직 기간. 보궐 위원은 남은 기간만 수행
제11조(위원의 해촉)	스스로 원할 때, 질병·부재, 직무태만·품위손상, 비밀 누설·사적 이용 등 사유 발생 시 군수가 해촉 가능
제12조(수당 및 여비)	관련 조례에 따라 지급 가능

○ 안 제1조 목적 조항에서 농업경관 보존과 관광 활성화라는 두 가지 축을 명확히 설정하였음. 다만, 지역 공동체 활성화 및 환경 보전을 추가한다면 목적의 포괄성이 강화될 수 있을 것임.

- 안 제3조 정의 조항에서 “농업경관”의 정의가 다소 추상적이므로, 논·밭·전통 농업 경관 등 구체적 예시를 포함한다면 해석의 명확성이 제고될 수 있으며, “서덕들”의 범위 지정 권한이 군수에게 있지만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지정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할 것임.
- 안 제6조는 군수가 주민지원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 참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해 규정함으로써 민·관 협력 구조를 마련하였음.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된 것으로 보이며, 「지방자치법」, 「경관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관광진흥법」, 「환경정책기본법」 등의 취지와 내용이 일치하므로 현행 상위법령과의 직접적인 충돌은 없음.
- 서덕들은 금원산과 현성산 아래 펼쳐진 넓은 들판과 청정 황금들녘으로, 전봇대와 비닐하우스가 없어 자연 그대로의 풍경을 유지하고 있으며, 전통 농촌 경관이 잘 보전된 지역임.
- 논이 황금빛으로 물드는 가을철 풍경이 특히 아름답고, 사계절 자연 경관이 뛰어나다고 평가받고 있어, 생태·문화·공공재로서의 가치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서덕들은 단순한 들판이 아니라 자연·문화·경제가 교차하는 복합자원으로써, 이를 보전하면서 지역 관광 및 농업 소득과 연계하는 전략은 환경을 지키는 동시에 주민 소득과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거창군에서 장기 검토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당장 사업을 시행하기보다는 주민들과 충분한 숙의 시간을 갖고 종합계획을 수립한 후, 시범 사업 시행으로 예산을 최소화하고 정책 효과를 검증해 볼 필요가 있음.
- 국내에서 현재 서덕들과 같은 원형 경관이 남은 들판이 거의 없어, 향후 국가중요농업유산(GIAHS) 또는 경관농업 정책으로 확장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아래와 같이 참고자료를 첨부함.

[참고1]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현황

번호	지정명	지역	지정연도
제1호	청산도 다랑이논	전남 완도군	2013
제2호	제주 밭담	제주특별자치도	2013
제3호	구례 운조루와 전통농업	전남 구례군	2014
제4호	하동 전통 차농업	경남 하동군	2015
제5호	금산 인삼농업	충남 금산군	2015
제6호	울릉도 화산섬 밭농업	경북 울릉군	2016
제7호	담양 대나무밭 농업	전남 담양군	2017
제8호	청원 생태농업	충북 청주시	2017
제9호	고창 갯벌농업	전북 고창군	2018
제10호	서천 모시농업	충남 서천군	2019

제11호	제주 돌담밭 농업	제주특별자치도	2019
제12호	남원 춘향골 전통농업	전북 남원시	2020
제13호	영양 전통 고추농업	경북 영양군	2020
제14호	진도 울돌목 김양식	전남 진도군	2021
제15호	보성 전통 차농업	전남 보성군	2021
제16호	예천 전통 삼베농업	경북 예천군	2022
제17호	부여 전통 벼농업	충남 부여군	2023
제18호	순창 전통 장류농업	전북 순창군	2023
제19호	청양 구기자 전통농업	충남 청양군	2024

[참고2]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지정 현황

구 분	지 정 명
농업유산(6)	청산도 다랑이논, 제주 밭담, 하동 전통 차농업, 금산 인삼농업, 울릉도 화산섬 밭농업, 고창 갯벌농업
어업유산(3)	제주 해녀어업, 섬진강 재첩잡이 손틀어업, 남해 죽방렴어업
산지농업(1)	울진 금강송 산지농업시스템

[참고3] 농업 경관 관광지 사례

지 역	전통 농업 경관 콘텐츠	관광 활용 방식
울진	산림농업 경관	생태탐방·체험관광
필리핀 바나우에	계단식 논	경관 관광·문화체험
베트남 무깡짜이	계단식 논	커뮤니티 기반 관광
오스트리아 와하우	포도밭 경관	와인투어, 풍경 관광
중국 롱지	계단식 논	농박, 트레일 관광
미국 애리조나	전통작물 전시	교육 관광
호주	목장 풍경	농장 체험 관광

●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951호, 2024. 1. 9., 타법개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 (생략)

3.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

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지원

바. 농가 부업의 장려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사. 자연보호활동

파.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시설의 설치 및 관리

더.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거창군 산림자원 소득증대 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26. 3. 6.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26. 3. 6.

2. 제안이유

- 임업인이거나 임업을 경영하려는 군민을 대상으로 임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하여 거창군의 임업소득 증대 및 산촌으로의 인구 유입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임업경영 교육·훈련을 신설함(안 제6조)
 - 1) 대상: 임업인이거나 임업을 경영하려는 군민
 - 2) 내용: 임산물의 생산·유통·가공, 산림경영 등
 - 3) 필요시 전문교육기관에 위탁

4.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제117조
- 나. 예산조치: 2026년 예산 30백만원 확보
-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및 법리 검토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5. 1. 14.~2. 3.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조례 개정의 필요성 : 필요
 - 임업소득 증대와 산촌으로의 인구 유입
- 상위법규 및 다른 법률과의 저촉여부 : 해당없음
 -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제117조
- 재정부담 여부 : 필요시
 - 안 제6조 신설에 따른 예산 소요
 - 임업대학 운영비용이 매년 30백만원 소요될 예정임
- 입법 운영상 예상 문제점 : 해당없음
- 검토결과
 - 본 개정안은 임업소득 증대 및 산림경영 활성화를 위해 임업인이거나 임업을 경영하려는 군민을 대상으로 임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하고자 제6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써
 - 주요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음.

조 항	현 행	개 정 안
제6조(임업경영 교육·훈련)	없음	<p><신설></p> <p>① 군수는 임산물의 생산·유통·가공, 산림 경영, 그 밖에 임업경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음.</p> <p>② 교육·훈련 업무를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p>

- 제6조를 신설함으로써 교육·훈련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임업인뿐 아니라 임업을 경영하려는 군민도 포함하여 대상을 확대하였음.
- 제6조제2항에 교육·훈련 업무를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함.
- 관련 상위법령을 살펴보면, 「산림기본법」 제2조에서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과 임업 생산성 향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산림경영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음.
- 이 밖에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교육·훈련과 관련해 임업인의 권익 증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 마련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으며,
-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으므로, 임업경영 교육·훈련을 조례로 신설하는 것은 자치입법권 범위 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 거창군은 농업·산림 비중이 높은 전형적인 농산촌 지역이며, 임산물 생산과 산림경영은 지역의 토지 이용 구조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산업으로 거창군의 산업 구조상 ‘임업 인력 육성’은 필수 기반 산업으로 보여지며,
- 단순 채취형 산업이 아니라 재배·관리·수확·유통·가공·경영까지 포함하는 소득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임업인에 대한 교육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판단됨.

●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951호, 2024. 1. 9., 타법개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

3.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 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산림기본법

[시행 2026. 2. 1.] [법률 제20751호, 2025. 1. 31., 타법개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의 보전,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임업의 발전 및 산촌의 진흥 등 산림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법제 및 재정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국민은 산림이 합리적으로 보전 및 이용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산림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④ 산림의 소유자 또는 산림을 이용하여 수익을 얻으려는 자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20.>

제6조(산림기능의 증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이 지니고 있는 국토환경의 보전, 임산물의 공급, 산림복지의 증진 및 탄소흡수원의 유지·증진 등 다양한 기능들이 충분하게 발휘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여 산림을 조성·보호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0.>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26. 3. 6.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26. 3. 6.

2. 제안이유

■ 사업명: 대성중 뒤 공원조성사업 토지 매입

- 대성중학교 배후부지 공원 조성으로 주민 편의 증진
- 2025. 7월 군민 행복토크 건의사항을 반영한 사업으로 소유자 (도향교재단)의 매각 승인에 따른 토지 매입

3.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 1) 사업명 : 대성중 뒤 공원조성사업 토지매입
- 2) 사업비 : 735백만원(군비) ※ 감정평가결과 반영
- 3) 사업기간 : 2026. 3. ~ 7.
- 4) 주요내용 : 토지 협의 매입
 - 기존 수림 최대 보존하는 자연친화적 공원 조성
 - 학생 야외학습장 및 생태교육 공간으로 활용
 - 산책로 및 건강증진시설 설치로 휴식·여가공간 제공

나. 취득재산 세부내역

(단위:m², 천원)

구분	재산종별	재산의 표시				기준가격	취득시기	취득사유	용도지역
		소재지	지목	면적	편입면적				
계				4,126	4,126	259,938			
취득	토지	거창읍 가지리 산94-6번지	임	4,126	4,126	259,938	2026. 4.	공원 조성	제2종 일반 주거 지역

* 공시지가 63,000원 /m²

라. 추진경과

- 1) 2025. 7. 16. : 군민 행복토크 건의(대성중~향교 보도블럭 설치 요청)
- 2) 2025. 9. 25. : 도 향교재단 토지 매입 재추진 계획 보고
- 3) 2025. 10. 14. : 감정평가 실시
- 4) 2025. 10. 22. : 토지 매입 보상협의 요청
- 5) 2025. 11. 12. : 도 향교재단 이사회 매각 승인

마. 향후계획

- 1) 2026. 3. :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반영 및 확보
- 2) 2026. 4. ~ 5. :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

바. 기대효과

- 1) 도심 내 자연 친화형 공공시설 확충으로 지역 균형발전 기여
- 2) 주민 교류 활성화 공간 제공으로 지역사회 소통 및 유대감 강화

4. 참고사항

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제16조

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다.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5조 및 시행규칙 제7조

5. 검토의견

- 본 사업은 대성중학교 배후부지의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도심 내 녹지공간을 확충하고, 주민 휴식공간을 조성하려는 사업으로,
- 취득 대상 토지는 임야 4,126m²이며 공시지가는 m²당 63,000원으로 기준가격은 약 259,938천원으로 제시되어 있으나, 실제 감정가는 735백만원으로 책정됨.
- 도심 내 부족한 생활권 공원 확보, 학생 야외학습 및 생태 교육 공간 제공, 주민 건강증진 및 휴식 공간 제공, 기존 수림을 활용한 자연친화적 공간 조성 등의 측면에서 주민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 군민 행복토크를 통해 제기된 주민 건의를 반영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주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으로 볼 수 있음.
- 토지 매입 후 공원 조성에 필요한 추가 사업비, 향후 시설 유지관리 비용 등에 대한 재정 부담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거창군 거창창포원 지방정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26. 3. 6.
-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26. 3. 6.

2. 제안이유

- 거창창포원 지방정원 내 관람차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방문하는 누구나 창포원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방문객을 늘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관람차 운영 등을 신설함(안 제19조)
- 나. 관람차 이용제한 등을 신설함(안 제19조의2)

4.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1)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5
 - 2) 「지방자치법」 제29조·제161조
- 나. 예산조치: 2026년 예산 73,000천원 확보
-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6. 2. 13. ~ 3. 3.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붙임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조례 개정의 필요성 : 필요
 - 관람차 운영 근거 마련
- 상위법규 및 다른 법률과의 저촉여부 : 해당없음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 「지방자치법」 제29조·제161조
- 재정부담 여부 : 연평균 5천만원 미만 소요.
 - 2026년도 예산 23백만원은 기확보(관람차 임대+운영비)
- 입법 운영상 예상 문제점 : 해당없음
- 검토결과
 - 본 개정안은 거창창포원 지방정원 내 관람차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요금 부과·감면 및 이용 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구 분	현 행	개 정 안
제19조	없음	신설: 관람차 운영 근거 마련 ① 군수는 관람차를 운영할 수 있음 ② 어린이·노인·거창군민 등 요금 감면 가능 ③ 요금 반환은 제23조 준용
제19조의2	없음	신설: 관람차 이용 제한 규정 ① 보호자 없는 어린이나 안내 불응자 등 제한 가능 ② 세부 운영 기준은 규칙으로 정함
제24조 제1호	입장료 등 감면	입장료 등 + 관람차 요금 감면

○ 안 제19조를 신설함으로써 관람차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보해 행정 집행의 정당성을 높일 수 있으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요금 감면을 명시하여 형평성과 공공성을 강화함.

○ 관람차 운영·요금·이용 제한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행정 집행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였음.

○ 관람차 구입·대여·인건비 등 초기 비용은 있으나, 연평균 5천만원 미만으로 추산되어 재정 부담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며

○ 관람차를 운영함으로써 방문객들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게 되면 교통약자들도 부담 없이 방문할 수 있게 되며, 새로운 체험 요소로 관광객 유입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지역경제에 미치는 실익이 더 크다고 판단됨.

○ 다만, 차량 운행으로 인한 소음과 배출가스 발생 등은 정원의 자연 친화적 이미지와 상충할 우려가 있으므로 친환경 차량 도입을 고려해 봐야 할 것임.

- 관련 법령 검토결과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5에 따라 지방정원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상위법령과의 충돌이나 위반 소지는 없음.

관련법령 발췌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18조의5(정원의 입장료 등) ① 정원을 운영하는 자는 정원에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정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29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161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거창군 별바람언덕 운영 및 관리 조례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26. 3. 6.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26. 3. 6.

2. 제안이유

- 거창군 별바람언덕에서 개최되는 행사 등의 원활한 운영과 편의 도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 범위를 정함(안 제1조~제4조)
- 나. 입장료, 순환버스 운영, 감면, 반환을 정함(안 제4조~제8조)
- 다. 지역경제활성화 지원, 교통통제 등, 위탁을 정함(안 제9조~10조)

4.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제156조, 「지방재정법」 제17조
- 나. 예산조치: 필요시 예산 확보
-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6. 1. 13. ~ 2. 2.
 -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 3) 비용추계서: 붙임
- 4)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조례 제정의 필요성 : 필요
 - 별바람언덕 행사 시 입장료, 순환버스 운영에 관한 규정 마련
- 상위법규 및 다른 법률과의 저촉여부 : 해당없음
 -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제156조
 - 「지방재정법」 제17조
- 재정부담 여부 : 필요시
 - 안 제6조, 제9조에 따라 재정 부담 발생
- 입법 운영상 예상 문제점 : 해당없음
-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별바람 언덕 행사 개최 시 입장료와 순환버스 운영 등 관람객의 편의 도모와 질서유지를 위한 것으로써
 - 주요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음.

조 항	주요 내용	세부 사항
제1조(목적)	행사 운영 및 관람객 편의 제공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

제2조(정의)	용어 정의	- 별바람언덕: 감악산 일원 및 시설 - 행사등: 군수 주최·주관 행사·축제 - 순환버스: 군수 지정 노선 운행 버스
제3조(적용범위)	적용범위	- 행사 기간에 한정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순환버스 관련 규정	- 다른 조례에 특별 규정 없는 경우 본 조례 적용
제5조(입장료)	입장료 징수	- 별표1 기준에 따라 징수 가능
제6조(순환버스 운영 등)	순환버스 운영 및 이용료	- 군수 운영 가능 - 별표 1 기준에 따라 이용료 징수
제7조 (입장료 등의 감면)	감면 규정	- 별표 2 기준에 따라 감면 가능
제8조 (입장료 등의 반환)	반환 규정	- 천재지변 등 취소 시 전액 반환 - 기타 사유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준용
제9조 (거창사랑상품권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 입장료·버스 이용료 일부를 상품권으로 환급 가능 - 세부 기준은 규칙으로 정함
제10조 (교통통제 등)	행사장 교통 통제	- 행사 기간 차량 진입 제한 - 임시 주차장 → 순환버스 이용 - 예외 차량: 공무용, 긴급차, 장애인·노약자 승인 차량, 예약 차량 등
제11조 (위탁 운영)	위탁 가능	- 입장료·버스·교통통제 업무를 법인·단체·개인에게 위탁 가능
부칙	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

○ 본 조례안은 거창군 별바람언덕 행사 운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관람객의 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점에서 목적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음.

○ 안 제5조, 제6조에 따라 순환버스 운영, 임시 주차장 지정, 교통 통제 등으로 방문객 이동을 원활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 안 제7조에서 장애인·노약자·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규정을 마련하여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였음.
- 안 제9조에서는 입장료·버스 이용료를 거창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상권 소비 촉진의 계기를 마련하였음.
- 안 제10조에 따라 교통통제 및 차량 진입 제한으로 일부 방문객들의 불편·불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홍보 강화 및 현장 안내 체계 구축으로 불편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감악산 별바람언덕은 해발 약 900m에 위치해 산지 특성상 도로 폭과 주차 공간이 제한 적일 수밖에 없으며,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아 대부분이 자가용을 이용함으로써 ‘꽃별여행 축제’ 기간에는 차량 정체가 심각한 상황으로
- 본 조례안에 따른 교통 통제로 일부 관광객의 불편과 행정·재정적 부담이 동반될 수 있으나 행사장의 질서유지와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서는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또한, 「지방자치법」 제156조에 따라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상위법에 어긋남이 없음.
- 다만, 비용추계 결과 매년 1억 7,600만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하므로 셔틀버스 대수·운행 일수 조정, 수입의 다변화 등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추가 대책이 필요해 보이며, 예산 투입 대비 경제 유발 효과 분석을 통해 사업의 효용성을 분석해 봐야 할 것임.

●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951호, 2024. 1. 9., 타법개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8. 8., 2024. 1. 9.>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타.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녹지, 유원지 등과 그 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제153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게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 「지방재정법」

[시행 2026. 4. 1.] [법률 제20871호, 2026. 4. 1., 일부개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거창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기본계획(안)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26. 3. 6.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26. 3. 6.

2. 제안이유

- 농식품부 농촌공간 재구조화법 시행에 따라 수립 중인 『거창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거창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계획 개요

- 1) 계획명 : 거창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기본계획
- 2) 계획기간 : 2026. ~ 2035.(10년간)

※ 여건 변화를 고려 5년마다 재검토, 필요시 정비(수정, 보완)

- 3) 수립방법 : 전문업체 용역(협상에 의한 계약)
 - 수행업체 : (주)엔브이(경남 창원 소재)
 - 용역기간 : 2024. 9. ~ 2026. 6.(22개월)
 - 용역비 : 339백만원

4) 주요내용

- 거창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재생을 위한 기초조사
- 농촌재생활성화지역 지정(지자체별 2개지역 이상 필수)
- 농촌특화지구 후보군 도출 등

4. 참고사항

가. 농촌공간 재구조화 계획수립 관련 법률 (책자 참조)

나. 농촌특화지구 지정 요건 (책자 참조)

5. 검토의견

- 최근 농촌지역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생활서비스 부족, 농업 기반 약화 등으로 정주 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어 농촌 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재편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음.
- 본 계획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되는 군 단위 법정계획으로 향후 농촌협약 등 정부 지원사업 추진의 기본계획이 된다는 점에서 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인정됨.
- 본 계획에서는 거창군을 북서부권과 남동부권으로 구분하여 농촌재생활성화지역을 설정하고 있으나, 권역별 핵심 전략 사업, 생활SOC 확충 방안, 농업·관광·산업 연계 전략, 등이 상대적으로 포괄적으로 제시되어 있어 향후 시행계획 수립 과정에서 권역별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사업 발굴과 전략 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농촌특화지구 후보군이 총 49개소로 도출되어 있으나 실제 지정 과정에서는 주민협정 체결 여부, 토지 이용 여건, 사업 추진 가능성 등이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후보군에 대한 우선순위 설정 및 단계적 추진 전략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농촌공간 재구조화 기본계획은 향후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협약 공모사업 추진의 기반이 되는 계획으로, 재생활성화지역별 핵심사업을 구체화하여 국비 확보를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함.
- 특히, 농촌협약을 통해 최대 400억원 규모의 국비 확보가 가능한 만큼 거창군 여건에 맞는 핵심사업 발굴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됨.
- 경남도내 시·군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은 대부분 2024년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2025~2026년 사이에 용역 착수 또는 수립 완료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농촌이 있는 139개 시·군이 10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며
- 일반 군 단위 용역비는 대부분 3~5억원 정도로 책정되고 있음.

거창군 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26. 3. 6.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26. 3. 6.

2. 제안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3항에 따라 거창군 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등을 지방의회에 보고하여 관련 의견을 듣고 향후 집행예산 편성 등에 협조를 구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거창군 군계획시설 전체 현황
 - 전체 군계획시설 : 1,089개소 / 31,554,438㎡
 - 집행 완료 : 822개소 / 13,597,653㎡
 - 미집행 시설 : 240개소 / 9,954,824㎡
- ↳ 이 중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은 224개소(9,869,110㎡)로 나타남.

나. 시설 유형별 주요 특징

- 하천시설 : 206개소 / 9,682,543m² (장기미집행 대부분 차지)
 - 도로시설 : 14개소 / 95,934m²
 - 공원시설 : 3개소 / 85,691m²
 - 녹지시설 : 1개소 / 4,942m²
- ↳ 특히, 하천시설의 경우 대부분이 장기미집행 상태로 남아 있어 현실적인 집행 가능성 및 관리 방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다. 단계별 집행계획

- 총 미집행시설 : 240개소 / 사업비 5,918억 원
 - 1단계(2025~2027) : 22개소 / 786억 원
 - 2단계(2027년 이후) : 216개소 / 5,131억 원
- ↳ 군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상당한 규모의 재정이 장기간 투입되어야 하는 사업으로, 실제 집행 가능성과 우선순위 설정이 매우 중요함.

4. 참고사항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 장기미집행시설 지방의회 보고 의무, 의회보고 방법 등 규정
- 나. 「도시·군계획시설 장기미집행 해소 및 관리 가이드라인」
(국토교통부, 2014. 12. 26.)
- 다. 「도시·군계획시설 장기미집행 해소 및 관리 가이드라인」 개정
(국토교통부, 2018. 3. 14.)

5. 검토의견

-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이후 장기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아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제한과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장기미집행시설의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금번 보고안에 따르면 거창군 전체 군계획시설 1,089개소 중 240개소가 미집행 상태이며, 이 중 224개소가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로 나타나 군계획시설의 장기 미집행 문제가 상당 부분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됨.
- 특히 미집행시설의 대부분이 하천시설(206개소)로 나타나고 있어 향후 하천정비사업과 연계한 단계적 집행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도로 및 공원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의 경우 지역균형발전과 주민편익 증진을 고려하여 우선 순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또한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른 총사업비가 약 5,900억 원 규모로 추정되고 있어 군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사업 추진에 상당한 재정 부담이 예상되는 만큼 국·도비 확보, 장기계속 사업 추진, 중앙부처 공모사업 연계 등 다양한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미집행시설 중 집행 가능성이 낮은 시설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도시 관리 차원에서 과감한 정비 또는 해제를 검토하여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계획 수립이 요구됨.

- 종합적으로 볼 때 본 보고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절차에 따라 장기미집행 군계획 시설의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시설별 우선순위 설정과 재원 확보 방안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관련법령 발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약칭: 국토계획법)

[시행 2026. 6. 3.] [법률 제21169호, 2025. 12. 2., 일부개정]

제48조(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 ①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11. 4. 14.>

②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효력을 잃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고시한 도시·군계획시설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설치하기로 한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황과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 4. 14., 2013. 3. 23., 2013. 7. 16.>

④ 제3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지방의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1. 4. 14.>

⑤ 제4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거나 도지사에게 그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1. 4. 14.>

[전문개정 2009. 2. 6.][제목개정 2011. 4. 14.]

거창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26. 3. 6.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26. 3. 6.

2. 제안이유

- ‘22년 “도지사 군민과의 대화시간” 및 “군수 읍면순방” 시 농업진흥지역 해제 주민건의를 수용하여 변화된 토지이용 현황에 맞춰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추진하고자 함.
- 이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해제 대상지에 대하여 지역 여건에 적합한 용도지역 변경 계획을 함께 수립하였음.
- 『거창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거 거창군의 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 1) 위 치 : 거창군 전역(농업진흥지역 63km² 중점)

2) 대 상

- 농업진흥지역 해제(65개소 1,066필지)
- 용도지역 변경(51개소 871필지)

3) 기 간 : 2023. 11. ~ 2026. 11.

4) 사 업 비 : 319백만원

5) 내 용 :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용도지역 변경

나. 대상지 내역

- 1) 농업진흥지역 해제 : 거창군 전역 65개소 632,801m²
- 2) 용도지역 변경 : 거창군 전역 51개소 492,236m²
 - 생산녹지지역 → 자연녹지지역 : 2개소 44,117m²
 - 농림지역 → 계획관리지역 : 33개소 219,353m²
 - 농림지역 → 생산관리지역 : 2개소 24,414m²
 - 농림지역 → 보전관리지역 : 14개소 204,352m²

4. 참고사항

가.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 책자 참조

나. 용도지역 변경 대상지 세부내역 : 책자 참조

다.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8조, 제42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 「농지법」 제31조, 「농지법 시행령」 제28조

5. 검토의견

- 본 안건은 농업진흥지역 지정 이후 장기간 경과하면서 토지 이용 현황과 제도 간 불일치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용도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임.

-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법」에 따라 우량 농지를 보전하고 식량 생산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지정되는 지역으로서, 무분별한 해제는 농지 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 다만, 이미 주변 지역의 개발로 농업 여건이 크게 변화하거나 실제 농업 이용이 곤란한 지역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토지 이용을 반영한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됨.
- 또한 이번 계획은 주민 건의를 반영하여 추진되는 만큼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 확대와 지역개발 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농업진흥지역 해제 대상지 선정 시 농지의 생산성, 집단화 여부, 향후 농업 이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량 농지가 무분별하게 해제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 용도지역 변경 이후 난개발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반시설 계획과 체계적인 토지 이용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용도지역 변경이 단순한 규제 완화에 그치지 않고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주민 생활 여건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향후 개발 방향과 활용 방안에 대한 행정적 지원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
- 대상지 선정 과정 및 향후 추진 절차에 있어서도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사업 추진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해야함.

거창군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26. 3. 6.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26. 3. 6.

2. 제안이유

- 고대 성곽 유적인 거열산성(군립공원)의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가야문화권 특정지역 개발계획”에 따른 “거열산성 진입도로” 전체구간 중 2공구 종점부 산지 지역에서 “거창 분산성 발굴조사” 결과 거창 분산성 체성부 추정범위에 사업노선(2공구) 일부 지역이 포함되어 거열산성 진입도로(중로1-16호선)의 군관리계획 선형 변경이 필요함.
- “거열산성 진입도로”의 2공구 사업계획안을 반영하여 중로 1-16호선 및 연결도로의 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거창군 관리계획(시설: 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거 거창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거창군관리계획(시설: 도로) 변경개요

1)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 종로1-16 : 선형 변경

(B=20m→20~23m, L=4,572m→4,590m)

- 종로1-13 : 선형 및 종점 변경

(B=20m, L=2,200m→2,294m, 종점 : 종로1-16→종로3-5)

- 소로1-25 : 선형 및 기점 변경

(B=10m, L=236m→111m, 기점 : 종로3-5→종로1-16)

나. 결정(변경)사유

1) 거열산성 진입도로 2공구 사업계획(안)을 반영한 종로 1-16호선 선형변경

2) 종로1-16호선 변경에 따른 연계노선(종로1-13, 소로 1-25)선형조정

4. 참고사항

가. 거창군 관리계획(시설: 도시) 결정(변경)안 : [붙임1]

나. 거열산성 진입도로 2공구 관련 도면 : [붙임2]

다.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5. 검토의견

○ 본 안건은 거열산성 진입도로 개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실시한 문화재 발굴조사 결과, 거창 분산성 체성부 추정 범위와 사업 노선 일부가 중첩되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문화재

보호 및 사업 추진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로 선형을 조정하고 이에 따른 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사안임.

- 거열산성 진입도로는 가야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과 연계된 기반시설로서 거열산성 접근성을 개선하고 향후 역사 문화 관광자원 활용 기반을 마련하는 측면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으로 판단됨.
- 또한 이번 군관리계획 변경은 문화재 발굴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역사유적 훼손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이며, 기존 노선 변경에 따라 연계 도로인 중로1-13호선 및 소로1-25호선의 선형을 함께 조정하는 사항으로 도시계획 체계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거창 분산성은 지역의 중요한 역사문화 자산으로 향후 추가 발굴조사 결과에 따라 문화재 보호대책을 충분히 마련하고, 도로 개설 과정에서도 문화재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기관과의 협의 및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아울러 본 사업이 단순한 도로 개설에 그치지 않고 거열산성과 연계한 역사문화 관광 활성화 및 지역경제 기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인 활용계획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본 안건은 문화재 보호를 고려한 도로 선형 조정이라는 점에서 군관리계획 변경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문화재 보호 대책과 관광자원 활용 방안 등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